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403

발의연월일: 2022. 4. 26.

발 의 자:정우택・구자근・김영식

백종헌 • 유경준 • 윤창현

이종성 · 조경태 · 지성호

태영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가격의 급등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기존의 주택 재산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5.17%로 OECD 회원국 평균인 4.37%를 크게 초과하였고 올해 전국 평균 공동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지난 해 공시가격 상승률인 19.05%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리 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주택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이 매우 높음.

이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시가표준액 9억원이하인 주택에서 1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함으로써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2제1항 중 "9억원"을 "12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은 법률 제17 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3조(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	주택 세율 특례) ①
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	
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	
준액이 <u>9억원</u> 이하인 주택에	<u>12억원</u>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표 (생 략)	표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